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 2018. 12. 10 개정 2019. 6.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적용 범위는 본교 전 부서로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따로 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 취급자"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보유, 저장, 편집, 검색·삭제, 출력,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6. 24.>
4. "개인정보파일"은 특정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처리정보"는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7. "보유"는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8. "보유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정보주체"는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10.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9. 6. 24.>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 관리조직) 개인정보 처리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 6. 24.>

- ① 개인정보 전체 관리부서는 기획조정처에서 하되 전산정보원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9. 6. 24.>
- ② 본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한다. <개정 2019. 6. 24.>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개인정보의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6. 24.>

②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9. 6. 24.>

- 1. 교무위원에 상당하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 2.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의 직원

③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6. 24.>

-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7.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9.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 10.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제목개정 2019. 6. 24.]

제7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이하 “보호담당자”라 한다)는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관리조직을 운영하는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9. 6. 24.>

②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6. 24.>

1. 개인정보 파일 대장 유지 및 관리
2.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현황 점검 및 공지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지원

[제목개정 2019. 6. 24.]

제8조(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주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4.>

② 분야별책임자는 해당부서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4.>

1.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3.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6.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7. 그 밖에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9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보호책임자가 되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6. 24.>
3. 위원은 외부인을 임명할 수가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24.>

1.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개인정보처리 위반자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호담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6. 24.>

⑥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 결의도 할 수 있다.

⑧ <삭제 2019. 6. 24.>

⑧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신설 2019. 6. 24.>

제10조(개인정보 수집) ①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1조(보유 범위) ①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② PC내 개인정보파일 보유 시 파일 암호화 등의 안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13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① 보유부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제한) ① 부서간의 개인정보이용 또는 조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② 보호책임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본교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본교 이외의 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타 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6. 24.>
③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본교 내부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4.>
- ⑤ 제3항 각 호에 따라 보유 정보에 대해 제3자가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근거 규정을 확인하여 <서식 1>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6. 24.>
- ⑥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내역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나 그룹웨어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4.>

제1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19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4.>

제17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4.>
3.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정기적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취급자(이하 “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 등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8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①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부서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필요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자의 결재 협조가 필요하며, 보호담당자의 결재를 득 한 후에 이용·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 6. 24.>

③ 정보취급자는 제4조의 각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식 2>의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관련 부처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 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호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4.>

②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4.>

제20조(개인정보의 열람 제한) ① 보호책임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정 2019. 6. 24.>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조사, 보상금·납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4.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5.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개인정보의 정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호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4.>

제22조(불복청구)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보호책임자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 정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4.>

제23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보호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개정 2019. 6. 24.>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제25조(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취급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 ②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③ 정보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④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26조(통지시기 및 항목) ① 정보취급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보호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24.>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정보
- ② 정보취급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9. 6. 2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개정 2019. 6. 24.>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 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 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서식 2>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취급자용 포함)

※ 경동대학교의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숙독하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경동대학교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관의 보호 대상 정보를 경동대학교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내부교직원 및 외부고객 등)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개인정보나 시설에는 접근하지 않으며, 관련 업무를 수행 시 경동대학교에서 지정한 데이터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경동대학교의 규정과 통제 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인증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경동대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 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는 기관 내부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경동대학교에서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업무상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경동대학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서류 등)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경동대학교의 내부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경동대학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생년월일 :

성 명 :

(인)

경동대학교 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교직원용)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경동대학교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공목적 외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을 금하고,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법령에 따른 보존은 예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제공 목적

- 교직원 채용 심사· 평가, 승진 심사 등
- 급여 관련 정보제공(국세청, 급여 관련 은행(우리은행 및 기타 은행 등) 자료 제공 등)
- 문자서비스 및 홈페이지 검색 정보 제공 등
- 인사 정보 관련기관에 제공(법률에 근거한 제공, 신원조회, 정보공시, 연수 등)
- 도서관 이용에 관한 인사정보 제공(도서관 홈페이지 및 기타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기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법률 근거, 상호(기관)협약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제공 정보의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개인속성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집/핸드폰), E-mail, 주소, 출신학교, 학위, 아이디, 홈페이지/블로그, 연말정산관련정보, 가족정보, 경력사항, 업적, 연구실적물, 자격증 및 면허증 기타 등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대학에 지원일로부터 목적달성 일까지(단, 법률에 근거한 보유기간은 법률에 따른다)
-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에 대하여는 개인책임입니다.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수집 또는 이용 · 제공) 합니다. 동의

※ 개인속성정보 처리에 동의(수집 또는 이용 · 제공) 합니다. 동의

20 년 월 일

소 속 :

생년월일 :

성 명 :

(인)

경동대학교 총장 귀하